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240

발의연월일: 2022. 4. 13.

발 의 자:정일영·강득구·고용진

김교흥 · 김병기 · 김주영

김진표 · 김회재 · 노웅래

민형배 · 박찬대 · 송영길

양경숙 • 우원식 • 유동수

유정주・이성만・이수진(비)

장철민 · 최기상 · 홍기원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하나인 재산요건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18년 이후 주택공시가격의 누적 상승률은 39.44%, '21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5%로, 최근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장려금의 재산 기준은 '18년 귀속분부터 적용되고 있어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는 상황임.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20년 귀속 장려금 기지급자 중 '21년 공시가

격 상승에 따른 재산요건 초과로 인해 지급 규모가 26만 가구(약 2,983억원) 축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8년 이후 '21년까지 공시 가격 누적 상승률을 감안하면 지급 규모가 49만 가구(약 5,537억원) 축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에 주택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저소득 가구가 수급 자격을 잃거나 수급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재산요건을 2.8억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1항제4호).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4호 중 "2억원"을 "2억8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
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격) ①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	
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	
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	4
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u>2억원</u> 미만일 것	<u>2억8천만원</u>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